

풍기·봉현지역 공장설립제한 문제해결 노력

관리번호	1-6		
사업명	수도법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 규제완화	추진현황	진도
		완료	100%
담당부서	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	담당자	김형주, 이보영(☎6056)

■ 사업개요

-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7km 이내 공장설립이 제한되어 풍기·봉현 지역 일부 인삼·사과 가공제조업의 공장설립 제한
 - 공장설립 제한지역(풍기, 봉현 일부) : 76,317천 m²
 - 주요피해 업종 : 인삼, 사과관련 제조업(피해규모 년 250억원 정도)
 - 인삼, 사과 등 지역 특산물 관련 공장설립 제한으로 일자리 감소, 관련 유통 판매업 감소로 서민생계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의 장기적 침체우려
- 공장설립승인지역 범위(수도법시행령 14조의3)를 4km~7km 이내로 완화 요구

■ 추진상황(실적)

- 2014.03.14 상반기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
- 2014.05.16 지방규제애로 발굴보고회 자료제출(도 규제개혁추진단)
- 2014.11.19 대구경북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건의(국무조정실장 주제)
- 2014.12.10 환경부 수도정책과장 외1명 현장실사(규제완화 필요성인정)
- 2014.12.11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현장실사
- 2015.06.22 상수원관리지역 민원발생 및 해결방안 연구용역
- 2016.03.03 수도법시행규칙 일부개정
 - 개정 주요내용
 - 공장설립승인지역(취수시설로부터 4km 초과지역부터 7km 이내인 지역 중 하천 또는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밖)에 설립할 수 있는 공장으로 인삼제품제조업, 장류제조업, 곡물도정업, 차류가공업 등 4개 업종을 추가

-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
 - 인삼시배지인 풍기, 봉현지역에 인삼제품제조업이 가능하게 되어 서민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
 - 다자간 FTA 협상을 앞두고 인삼을 활용한 6차 가공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

■ 향후 추진계획

- 앞으로 지역발전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폐지·완화해 나갈 계획임

담당부서	기획감사실	실 장	김교영	☎ 639-6020
		규제개혁팀장	김형주	☎ 639-6056
		주무관	이보영	☎ 639-6057